

경운대학교 부설연구소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을 정하여 각 연구소의 발전과 효율성을 유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경운대학교의 연구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특수목적연구소 : 경운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 연구, 봉사 등의 특수 목적으로 설립하는 연구소
2. 일반연구소 : 연구소의 사업, 연구원의 구성 및 연구분야 등이 경운대학교 또는 수 개의 대학에 관련된 연구소
3. 인준연구소 : 총장의 인준을 받아 운영하는 연구소

제3조(설치신청) 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연구소 설립신청서
2. 연구소 규정(안)
3. 사업계획서 및 연구소 예산계획서

제4조(연구소의 인준여부) 설치신청에 의한 연구소의 인준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준한다.

1. 기존 연구소에 미치는 영향
2. 인건비, 연구비, 운영비 등의 재정의 확보 및 운영 가능성
3. 연구소의 목적 및 기능의 유지 가능성
4. 연구원의 확보 가능성
5. 설립 후 연구소 자체운영 능력 확보

제5조(연구소장의 임명) 각 연구소장의 소장은 각 연구소의 발기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제6조(연구소의 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연구업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된다.
-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7조(재정) 특수목적 연구소의 경우는 경운대학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비 및 기타 재원으로 충당하고, 그 외 연구소의 경우는 교비지원 없이 교외연구지원금 및 기타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삭제)

제9조(보고) 연구소장은 사업 보고서 및 결산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학년도 사업계획서
2. 매년 3월 말까지 전학년도 사업결과 보고서
3. 중요 사업실시에 따른 결과보고서
4. 논문집 발간에 관한 사항
5. 출간된 논문집은 1주일 이내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삭제)

제11조(연구소의 폐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를 폐지할 수 있다.<신설 2019.03.01.>

1. 실적이 저조한 연구소
2. 연구소의 사업목적과 위배될 때
3. 유사 성격의 연구소를 통합 또는 폐쇄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03.01.>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